

순천대학교 편입학생 학점 및 성적 인정 규정

제정 1992. 7. 28. 개정 1996. 6. 24.
개정 1998. 2. 7. 개정 1999. 4. 17.
개정 2000. 5. 31. 개정 2004. 2. 19.
개정 2007. 2. 27. 개정 2010. 6. 4.
개정 2014. 11. 11. 개정 2017. 3. 7.
개정 2020. 6. 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교학규정 제4조에 의거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에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996. 6. 24)

제2조(학점인정 범위) ① 3학년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에 대해서는 대학의 심사를 거쳐 인정하되, 졸업학점의 2분의1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학부는 6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7. 2. 27, 2010. 6. 4, 2014. 11. 11)

② 3학년 편입생은 전공학점으로 3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의 3학년 편입생은 42학점(사범대학은 교직 교과목을 제외하고 36학점)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6. 9.)

③ (삭제 2020. 6. 9.)

제3조(학점 인정 방법) ①일반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.(개정 2004. 2. 19.)

1. 교양 학점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.

2. 전공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07. 2. 27, 2014.11.11)

3.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전적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. (개정 2007. 2. 27, 2014. 11.11)

② 학사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.(개정 2004. 2. 19.)

1. 교양 학점은 이 대학교에서 취득하여야 할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2. 전공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7. 2. 27, 2014.11.11)

3. 교양·전공 및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(개정 2007. 2. 27, 2014.11.11.)

제4조(학점인정의 제한) ①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D⁺이상만 인정한다. 다만, 건축학부는 전적대학에서 C⁺학점 이상 취득한 교과목만 인정한다.(개정 1996. 6. 24, 2017. 3. 7.)

② 삭제(1996. 6. 24)

제5조 삭제(1996. 6. 24)

제6조(교과목 중복이수 금지)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전공교과목은 중복 이수할 수 없다.(개정 2004. 2. 19)

제7조(학점단위조정) 전공교과목의 경우 전적대학의 학점단위와 이 대학교의 학점단위가 다른 때에는 이 대학교의 학점단위 이상인 교과목만 인정한다.(개정 2004. 2. 19)

제8조 삭제(1996. 6. 24)

제9조 삭제(1996. 6. 24)

제10조(교과과정 이수) ① 3학년에 편입학한 학생은 2년을 감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과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에 따라 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07. 2. 27)

② (삭제 2007. 2. 27)

제11조(학점 재인정)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편입학생의 학점을 재인정할 수 있다.

1.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경우
2. 휴·복학 등으로 인하여 적용교육과정을 바꾼 경우
3. 복수전공 또는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경우 (개정 2010. 6. 4)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재 인정할 때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학점 인정 범위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교직교과 및 교직과목은 전공 인정 학점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0. 6. 4)

부 칙(1992. 7. 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 6. 2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8. 2. 7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2조의 변경규정 시행 이전에 인정한 학점 및 성적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999. 4. 1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5. 3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학사편입학생의 학점인정과 편입학생의 복수전공 등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199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04. 2. 19.)

이 규정은 2004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07. 2. 2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6. 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11.1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3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6. 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